

교원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의 연구분위기 조성과 교재연구, 학술연구를 장려하는 등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원칙) 연구보조비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예산내에서 직위별, 연구교원별 소정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구보조비 비과세처리 한도내에서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 (지급액) ① 교원 직위별 지급액은 보수규정 표 8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.
② 연구 교원별 지급액은 연구비 관리 규정 제11조 ①, ②, ④, ⑥항 및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4조 ③항에 의해 소정액을 지급한다.

제4조 (지급일) ① 교원 직위별 연구보조비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며,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한다. 다만 20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② 연구 교원별 연구비는 연구비 관리 규정 제11조 ①, ②, ④, ⑥항 및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4조 ③항에 의해 소정액을 지급한다.

제5조 (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총장의 재가를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)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, 제3조, 제4조)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